

#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 인 서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4년 3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임계리사 윤 기 수

#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

### 1. 보험종목 및 명칭

구 분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무)하나트리플적립연금보험	종신연금형 [정액,체증(5·10%)]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7·10·15·20 년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 2. 연금개시연령, 보험기간

연금개시연령	보험기간
- 개인연금형 : 49 ~ 75 세형 - 부부연금형 : 49 ~ 75 세형	◎ 종신 - 제 1 보험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 2 보험기간 제 1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단,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단,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은 해당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최고 가입연령을 초과할 수 없음.

### 3.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49 세~64 세형	5,7,10,15,20 년납, 전기납
65 세~69 세형	5,7,10,15,20 년납, 55 세납, 전기납
70 세~75 세형	5,7,10,15,20 년납, 55,60 세납, 전기납

4. 가입연령

보험료납입기간	연금개시연령			
	49~55 세	54~64 세	65~69 세	70~75 세
5 년납	15~(연금개시연령-11)세	15~(연금개시연령-13)세	15~(연금개시연령-13)세	15~(연금개시연령-18)세
7 년납	15~(연금개시연령-10)세	15~(연금개시연령-11)세	15~(연금개시연령-11)세	15~(연금개시연령-14)세
15,20 년납	15~(연금개시연령-납기)세	15~(연금개시연령-납기)세	15~(연금개시연령-납기)세	15~(연금개시연령-납기)세
55,60 세납	-	-	15~(세납-5)세	15~(세납-5)세
10 년,전기납	15~(연금개시연령-10)세	15~(연금개시연령-11)세	15~(연금개시연령-11)세	15~(연금개시연령-13)세

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6. 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연령 15~49 세 : 1 구좌당 월 15 만 ~ 100 만원
- 가입연령 50~64 세 : 1 구좌당 월 20 만 ~ 100 만원
- 추가납입보험료 -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함.

7.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월납보험료 × 12 × min { 보험료납입기간, 10 }

9. 연금계약 순보험료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②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③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내부지표 + 외부지표) / 2

-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times 100$$

- I: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 E: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 A: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  
A<sub>6</sub>: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sub>0</sub>: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외부지표 산출식 = (B1 + B2 + B3) / 3

- B1: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2: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3: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B<sub>i</sub>)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sub>i</sub>(-3):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sub>i</sub>(-2):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sub>i</sub>(-1):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AA-)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 ④ ②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②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 ⑥ 부리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한다.
- ⑦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 ⑧ 3년 미만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70%, 3.0%)
2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80%, 3.0%)
3년 미만	Max(「공시이율」의 90%, 3.0%)

10.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

11. 부가하는 특약

무배당정기특약,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무배당재해상해특약Ⅱ, 무배당입원특약Ⅲ, 무배당암보장특약Ⅱ, 무배당중신입원특약, 무배당중신사망보장특약, 무배당치매간병특약

12. 기타

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로 한다. 단,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 ①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 ②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
- ③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④ 계약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 ⑤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⑥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 학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단,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함.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



(별첨 제 1 호)

##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